

## 피난·방화 관련 건축법규 개정 내용

### ■ 직통계단의 소요수 산정기준 강화

[보행거리에 따른 소요수]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불연재료 : 50미터 이하  
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  
집회장·관람장 및 전시장을 제외한다.
- 기타구조 : 30미터 이하

☆ 건축법시행령 제34조 <개정 2005.7.18>

- ☞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및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불연재료 이더라도 보행거리에 따른 직통계단의 소요수 산정을 30미터 이하로 적용함으로써 지하층에 설치된 집회장 등의 재실자에 대한 피난안전을 증대하고자 함.

### ■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 개방공간의 설치 신설

- 대상 :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
- 방법 : 재실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건축법시행령 제37조 <신설 2005.7.18>

- ☞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사시 재실자가 건물내부 피난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외부 공간(Sunken Garden)으로 나와 피난층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용인원이 많은 지하 시설에 대한 피난안전을 보다 확고히 하고자 함.

## ■ 옥상광장 등의 난간 설치높이 변경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의 층에 있는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가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건축법시행령 제40조 <개정 2005.7.18>

☞ 옥상광장, 옥외특별피난계단 등의 노대에 설치하는 난간높이를 종전 1.1미터 이상에서 1.2미터 이상으로 변경함.

## ■ 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신설

대지 안에는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단독주택은 유효너비 0.9미터 이상
2.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은 유효너비 3미터 이상
3. 그 밖의 용도의 건축물은 유효너비 1.5미터 이상

☆ 건축법시행령 제41조 <신설 2005.7.18>

☞ 건축물 바깥쪽 출구와 도로 사이에 설치하는 통로의 유효폭 기준을 새로이 신설하여 피난 및 소화활동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 ■ 완전구획 건물의 피난규정 적용 강화

건축법시행령 제34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 등"이라 함)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본다.

☆ 건축법시행령 제44조 <개정 2005.7.18>

☞ 건축물이 개구부 없이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완전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고 다음의 규정을 적용하게 함으로써 완전구획 건물에 대한 각각의 피난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 제36조(옥외피난계단의 설치)
- 제37조(지하층과 피난층 사이 개방공간의 설치)

- 제38조(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
- 제39조(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
-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 제41조(대지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의 설치)

## ■ 방화구획 관련 사항

### 1. 방화구획의 설치

#### 가. 면적·층별구획

- 다만, 「원자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나. 방화구획 완화

### 2.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 가.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 #### 나. 급수관·배전관 기타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다음의 어느 하나로 메울 것

- 한국산업규격에서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
- 건교부장관이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

- #### 다.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 단,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풍도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제외

☆ 건축법시행령 제46조 <개정 2006.5.8>

건축법피난·방화규칙 제14조 <개정 2006.6.29>

- ☞ 1. 원자력발전소 등의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방화구획의 설치에 관하여 건축법의 규정이 아닌 원자력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적용기준을 단일화 함.
- 2. 방화구획 관통부 충전재료를 종전에는 '시멘트모르타르 기타 불연재료'로 하였으나 '성능인정을 받은 내화충전구조'로 변경함으로써 방화구획 관통부의 내화성능 향상을 도모함.(시행 2007.12.29)

## ■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내장재료 적용 완화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공장 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내장재료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로 사용할 것(단, 기숙사 및 구내식당은 제외)
2. 화재시 대피가 가능한 출구를 갖출 것
  - ※ 건축물의 내부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구(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출구를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된 유효너비 1.5미터 이상의 출구를 말한다.
3. 다음의 복합자재(불연성인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된 자재로서 양면 철판과 심재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내부마감재료로 사용할 것
  - 가. 철판 :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중 일반용으로서 전면도장의 횡수는 2회 이상이고 두께는 0.5밀리미터 이상인 것
  - 나. 심재
    - 발포폴리스티렌보온재로서 비드보온판 4호 이상인 것
    - 경질우레탄폼보온재로서 보온판 2종2호 이상인 것
    - 그 밖의 심재는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인 것

☆ 건축법시행령 제61조 <신설 2005.7.18>

건축법피난·방화규정 제24조의 2 <개정 2006.6.29>

- ☞ 1. 공장용도의 건축물은 규모에 관계없이 내장재료 사용의 제한을 받는다. 즉, 거실은 난연재료(난연3급)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복도·계단·통로에는 준불연재료(난연2급)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정상 발화위험이 적은 소규모 공장에 대하여는 이러한 내장재료 사용제한을 완화함으로써 폴리스티렌 및 우레탄폼 샌드위치패널을 이용한 건축물의 건축을 가능하도록 하여 건축주의 편의를 도모함.
2. 발포폴리스티렌 비드보온판 4호 : KS M 3808(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제) 에 의한 보온단열제의 일종으로 밀도 15kg/m<sup>3</sup> 이상
3. 경질우레탄폼 보온판 2종 2호 : KS M 3809(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제)에 의한 보온단열제의 일종으로 밀도 35kg/m<sup>3</sup> 이상
4. 복합자재 사용이 가능한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

분류번호	업종
15111	도축업
15119	기타 육지동물고기 가공 및 저장처리업
15121	어육 및 유사제품 제조업
15122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15123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15124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15125	식용 해조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15129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15131	과실 및 채소 주스 제조업
15132	과실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5133	김치 및 유사 채소절임식품 제조업
15139	기타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5201	액상 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15202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 빙과류 제조업
15451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15452	장류 제조업
15453	식초 및 합성조미료 제조업
15454	식품첨가물 제조업
15541	얼음 제조업
15542	생수 생산업
15549	기타 비알콜성 음료 제조업
26111	판유리 제조업
26112	기타 1차 유리 제조업
26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26122	판유리가공품 제조업
26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26191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26192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26199	그 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26211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26212	위생용 도자기 제조업
26213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26219	기타 일반 도자기 제조업
26221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26229	기타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26231	점토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6232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6239	기타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26311	시멘트 제조업
26312	석회 제조업
26313	플라스터 제조업

분류번호	업종
26321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26322	레미콘 제조업
26323	플라스터제품 제조업
26324	섬유시멘트 제품 제조업
26325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26326	콘크리트 관 및 조립구조재 제조업
26329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
26911	석재 성형 가공품 제조업
26912	착색골재 생산업
27111	제철 및 제강업
27112	합금철 제조업
27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27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311	선철주물 주조업
27312	강주물 주조업
27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27322	동주물 주조업
27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28112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28113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28119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주 : 분류번호는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분류번호를 말한다.

작성 : 조사연구팀 이유태